

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3(장애인 등록 취소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거주불명의 사유등으로 송달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05일

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장

- 공 고 명: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
- 공고기간: 2025. 12. 05. ~ 12. 19.(15일간)
- 공시송달 대상

처분 대상	성명	양*	생년월일	195*. 01. 1*.
	주소	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273번안길 **~** (운남동)		
처분 원인	재판정 불응			
처분 내용	장애인 등록 취소			
처분 일자	2025. 12. 03.			
법적 근거	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			

- 공고방법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- 문 의 처: 운남동행정복지센터(☎062-960-7767)
- 기타사항

가. 장애인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5. 12. 17.(*해당시)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,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나.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